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지방검찰청

전문공보담당자 제1차장검사 이준식, 032-861-5002



창원지방검찰청

전문공보담당자 인권감독관 정광일, 055-239-4365

보도자료 2020. 7. 21.(화)

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형사1부장 백수진, 063-472-4328

제 목 한국지엠㈜ 근로자 불법 파견사건 수사 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- ☑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(제12조 제1항)
 - ※ 2020. 7. 20.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- 2020. 7. 21. 인천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(부장검사 이희동).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(부장검사 장윤태), 군산지청 형사1부(부장검사 백수진)는 한국지엠㈜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, 2017. 9. 1.부터 2019. 12. 31.까지 한국지엠㈜이 근로자 1,719명을 불법파견받은 사실을 확인하여, 대표이사 AOO 등 임원 5명과 법인, 협력업체 운영자 23명 등 총 29명을 불구속 기소함

□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- ㅇ 피고인
 - 한국지엠㈜(법인), A○○(50세, 대표이사) 등 29명 ※ 별점 피고인 명단 참조
-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
 - **[피고인 A○○~E○○ 한국지엠㈜ 임원 5명]** 공모하여 2017. 9. 1.부터 2019. 12. 31.까지(군산공장의 경우 가동중단일인 2018. 2.까지) 사이에 한국 지엒㈜의 부평·창원·군산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총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총 1,719명(부평 14개 업체 797명, 창원 8개 업체 774명, 군산 2개 업체 148명)을 파견

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, 도장, 조립 등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**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**

- **[피고인 한국지엠㈜**] 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용인들인 A〇〇~E〇〇가 근로자들을 불법파견받아 **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**
- [피고인 F○○ 등 협력업체 운영자 23명] 각각 2017. 9. 1.부터 2019. 12. 31. 까지 사이에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, 근로자 총 1,651명을 파견이 금지된 부평공장, 창원공장, 군산공장의 자동차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- ※ 협력업체 운영자 1명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

② 수사경과

- '18. 1. 10. 대검찰청, A○○ 등에 대한 고발장(고발인 금속노조 등) 접수 후 각 검찰청에 이첩, 각 검찰청 관할 노동청에 수사지휘
- '19. 4. 30. 인천·창원 노동청, 한국지엠㈜ 본사 및 부평공장 압수수색
- '19. 12. 노동청, 인천·창원지검에 각 기소의견 송치
- '20. 2.~6. 인천·창원지검, 피고인들 및 참고인들(총 54명) 조사, 현장검증 등
- '20. 6. 노동청, 군산지청에 기소의견 송치, 군산지청 수사 진행
- '20. 7. 21. 3개 지검 기소(본사 임원의 경우 인천지검 이송 병합기소)

③ 수사의의 및 참고사항

-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'도급 계약'으로 주장하면서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들을 대거 파견하고, 이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비정규직이 양산(1,719명 확인)되는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엄단
- 인천·창원지검, 군산지청에서 각각 수사한 후, 본사 및 본사 임원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형사재판을 위해 한국지엠㈜ 본사 소재지인 인천지검으로 이송한 후 일괄 기소하고, 창원공장 및 군산공장 협력업체 운영자에 대하여는 각 업체 소재지인 **창원지검과 군산지청에**서 기소

피고인 명단

연 번	피고인	직위 및 담당업무	비고
1	한국지엠㈜ (법인)	○ 법인	인천지검 기소
2	A O O (남, 50세)	○ 한국지엠㈜ 대표이사(외국인) ○ 회사 업무 총괄	"
3	BOO ~ EOO (총 4명)	○ 한국지엠㈜ 전현직 임원 ○ 회사 생산업무 총괄	"
4	FOO ~ ROO (총 13명)	○ 한국지엠㈜ 부평공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협력 업체 운영자	"
5	SOO ~ ZOO (총 8명)	○ 한국지엠㈜ 창원공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협력 업체 운영자	창원지검 기소
6	甲〇〇, 乙〇〇 (총 2명)	○ 한국지엠㈜ 군산공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협력 업체 운영체 (※ 2018. 2. 군산공장 폐쇄)	군산지청 기소

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제4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제5조제5항, (중략)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
- 2. 제5조제5항, (중략)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

제5조(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)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·기술·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

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(役務)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

제7조(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)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.